



E-Verify 고용주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2009년 3월 10일 개정)

해야 할 일...

- 신입 사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출신 국가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신입 사원에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신입 사원이 I-9 양식을 작성한 **후** 신입 사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임시 불확인 고지서를 직원에게 즉시 제공하고 검토한다.
- 임시 불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사회보장국(SSA) 또는 국토안보부(DHS)의 추천서를 즉시 제공한다.
- 임시 불확인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임시 불확인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E-Verify에서 매일 확인한다,
- 직원이 최종 불확인을 잘못 수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E-Verify에 연락한다,
- E-Verify의 직원 참여에 관한 필수 고지서와 이민 관련 부당업무 특별자문실(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Immigration-Related Unfair Employment Practices: OSC)이 발생한 비차별 고지서를 게시한다.
- 목록 B 문서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직원으로부터 사진이 있는 I-90 양식 목록 B 문서를 수락한다.
- 프로그램 액세스에 사용된 직원의 개인정보 및 암호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 사회보장 번호가 배부될 때까지 사회보장 번호가 아직 배부되지 않은 직원에 대한 E-Verify 조회를 연기한다.
- 사회보장 번호를 배부받지 못한 직원이 해당 기간에 일을 하면서 번호가 배부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뒷면의 E-VERIFY 금기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SC 고용주 핫라인에 1-800-255-8155로 문의하십시오.

TDD(청각장애): 1-800-237-2515

www.usdoj.gov/crt/osc



E-Verify 고용주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2009년 3월 10일 개정)

하지 말아야 할 일...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신입 사원 또는 재직 중인 직원이 미국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다고 “의심”되거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선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 주노동국(State Workforce Agency) 직원이 아니면서 취업신청자를 미리 선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 직원이 임시 불확인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 임시 불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최종 불확인을 통지 받지 않았거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해진 업무 시간 거절 또는 삭감, 교육의 지연 또는 금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요구,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요구, 해당 기간에 취업할 자격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직원에게 SSA 또는 DHS를 추천할 때 이들 기관이 발행한 인쇄물 또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직원에 대한 임시 불확인을 받은 후에도 직원의 취업 자격에 대한 추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E-Verify의 사진 도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사회보장 번호의 배부를 기다리는 직원에 대한 E-Verify 조회를 직원의 사회보장 번호가 배부되기 전에 실시하지 않는다.

(뒷면의 E-VERIFY 금기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SC 고용주 핫라인에 1-800-255-8155로 문의하십시오.

TDD(청각장애): 1-800-237-2515

www.usdoj.gov/crt/osc